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20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5
2. 석유화학단지 정의 및 현황	6
3. 주요항목별 검토의견	7
가. 제정안의 입법 취지 검토	7
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지원금의 결정	10
다.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등	15
※ 참고자료	17
1. 국내 석유화학산업단지 현황	17
2.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 현황	1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성일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23.
3. 회 부 일 : 2021.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생산액은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7.3%를 차지하는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산업은 집적 이익이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입지적 특성이 좋은 지역에 기업체가 집약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산, 울산, 여수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국내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석유화학 원료와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석유화학단지에서 화재발생이나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 주변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석유화학단지 인근 지역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특정지

역이 수인함으로써 달성되는 사회 전체의 편익을 고려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석유화학단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석유화학단지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지원사업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지원사업 시행자는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되,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지원사업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2호)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¹⁾은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지원사업의 시행(제4조~제14조) 및 제3장 보칙(제15조~제19조)을 포함한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 ‘지원사업의 시행’은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종류 및 시행자,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및 사용, 사업의 우선 시행, 지원사업의 중단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보칙’은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지역기업의 우대, 결산 보고, 보고 및 검사,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제정안은 1989년 6월 제정되어 199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조문 및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1) 동 제정안과 동일한 제안 이유와 조문 체계 등으로 제20대 국회인 2016년 7월 및 제21대 국회인 2021년 3월 26일 각각 성일종의원 대표발의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0823호, 2109158)을 제안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2. 석유화학단지 정의 및 현황

제정안 제2조²⁾는 “석유화학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입주율과 가동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전체 입주기업체 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화학업종을 운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전체 입주기업체의 연간 생산액 중 석유화학입주업체의 연간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중 전체 입주기업체 대비 석유화학입주업체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전체 입주기업체 연간 생산액 대비 석유화학입주업체의 생산액이 50% 이상인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5개, 일반산업단지 41개 등 총 46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24년 11월 현재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로는 울산 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등이 운영 중에 있음³⁾.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화학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입주율과 가동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가. 전체 입주기업체 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화학업종을 운영하는 입주기업체(이하 “석유화학입주업체”라 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나. 전체 입주기업체의 연간 생산액 중 석유화학입주업체의 연간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주변지역”이란 석유화학단지의 경계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석유화학단지의 경계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체적인 현황은 【참고자료】 국내 석유화학산업단지 현황 및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현황 참조.

3. 주요항목별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 취지 검토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률은 2024년 11월 현재 5건에 달하고 있음.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은 지역주민들이 혐오·기피하는 시설로서, 특정 지역의 설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집단적 민원 해소를 통해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정안과 같이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입법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표 1] 공공시설물 주변지역 지원 관련 입법 현황

연번	법률명	제정연도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989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99년
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5년
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제정안의 석유화학단지는 위 시설들과 달리 혐오·기피 시설인 공공시설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화재발생,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 주변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과 같이 석유화학단지 인근 지역을 일정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경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간기업이 산업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변지역의 환경악화와 주민 불편 등에 대한 국가의 별도 지원 여부 및 재원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①현재 발전소·폐기물처리시설·댐 등 공공시설 이외에는 특정 산업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법률이 없어 제정안이 입안될 경우 타 산업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②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타국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임.

한편, 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국내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석유화학 원료와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는 서산, 울산, 여수 등’이 제정안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2조는 적용 대상⁴⁾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중 전체 입주기업체 대비 회사 수 또는 생산액을 기준으로 석유화학입주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것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울산 온산 석유화학단지는 석유화학입주업체의 비중이 기업수 기준으로 21.7%(319개사/1,468개사), 생산액 기준으로 5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⁵⁾되어 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익성·형평성 측면 등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화학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입주율과 가동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가. 전체 입주기업체 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화학업종을 운영하는 입주기업체(이하 “석유화학입주업체”라 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나. 전체 입주기업체의 연간 생산액 중 석유화학입주업체의 연간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 (후략)

5) 2023년 기준 울산 온산 석유화학단지의 정유·석유화학 생산량 비중은 52%로서, 이 중 정유 부문을 제외하는 경우 석유화학업종의 생산량 비중은 50% 이하일 것으로 예상됨. (석유화학업종 생산액만 따로 분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음)

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지원금의 결정(안 제7조)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동 특별회계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액은 석유화학단지의 규모·생산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석유화학단지의 규모·생산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피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특정 지역이 수인함으로써 달성되는 사회 전체의 편익을 고려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 설립 이래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2]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피해 사례

구분	일자	사고 경위	피해 현황
울산 (‘72년)	2014.1.9.	에이케이엔엠엔바이오(주) 전가누전 화재사고	물적피해 117백만원
	2014.10.30.	(주)남부 공장 저장창고 화재사고	물적피해 300백만원
	2016.10.24.	(주)금정 공장 원인미상 폭발 사고	1명 부상, 물적피해 100백만원
	2018.2.4.	유창하이테크(주) 쓰레기 소각장 화재발생	물적피해 1,520백만원
	2019.1.21.	대성산업가스 ess저장장치실 화재사고	물적피해 4,843백만원
	2019.5.22.	현대자동차 선박 화재사고	신차 3대 전소, 3명 부상, 물적피해 473백만원
	2020.8.20.	대송정밀화학 공장 배관 화재발생	물적피해 650백만원
	2022.1.12.	sk에너지(주) ess 저장장치 화재사고	물적피해 4,800백만원
	2022.5.19.	에쓰-오일(주) 공정 콤프레서 폭발사고	1명 사망, 9명 부상, 물적피해 2280백만원
	2022.8.31.	sk지오센트릭(주) 에틸렌 누출 폭발사고	1명 사망, 6명 부상, 물적피해 580백만원
	2024.7.28.	에쓰-오일(주) 공정히터 폭발 화재사고	물적피해 430백만원
여수 (‘79년)	2015.3.17	LG화학부두 생산과정 중 화학물질 누출	물적피해 1,500백만원
	2017.7.21	LG화학 발전기 문제로 인한 정전 발생	물적피해 125백만원
	2020.6.22	삼남석유화학(주) 보일러 화재사고	물적피해 400백만원
	2021.12.13	이일산업(주) 탱크 배관작업 중 폭발사고	3명 사망, 물적피해 2,150백만원
	2022.2.11	여천NCC 열교환기 기밀테스트 중 폭발사고	4명 사망, 4명 부상, 물적피해 1800백만원
대산 (‘91년)	1991. 2.14	서산 극동정유 분해탑 폭발	반경 1km 이내 5백여 주민 대피
	1993.10. 1	프런티어 익스프레스호 나프타 유출	주민 157명 구토 및 두통증세로 치료
	2007.12. 7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피해 청구, 127,471건, 4조 2,273억원
	2009.12.21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부두 기름 유출	병커C유 5,900L 유출
	2012. 1. 3	47t급 폐유 운반선 폭발	1명 실종, 1명 경상
	2014.12.28	탱크로리 전복으로 아스팔트유 유출	아스팔트유 200L 유출
	2015. 1.15	실리콘 원료 탑재 탱크로리 전복	장시간 교통체증 유발
	2018. 1.15	롯데케미칼 벤젠 누출	벤젠 4t 누출
	2019. 5.17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주민 등 120여명 병원치료
	2020. 3. 4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 사고	주민 등 60여명 부상
	2020. 5.19	LG화학 대산공장 화재 사고	1명 사망, 2명 경상

* 작성기준 : 한국산업단지공단 사고통계 집계기준(①사망사고, ②재산피해 1억원 이상, ③ 유해 화학물질누출(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기준) 사고) 中 물적피해 1억원 이상 발생 사고

제정안은 시설물 설치 또는 입주에 따른 주변지역의 생활상 불편과 환경권 침해 등을 지원사업으로 보상⁶⁾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시설물 주변지역 지원 법률 체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기존의 공공시설물 주변지역 지원 법률과 달리 석유화학단지⁷⁾에 입주해 있는 석유화학업체들의 경우 민간기업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주변지역 지원 여부 검토 시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은 지원사업의 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에특회계의 목적이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인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에 따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원 사업이 에특회계의 사업으로 포괄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

6)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이 속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과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이를 위해 에특회계 투자계정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수입·판매부과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일부(100분의 3 이내)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123)이 발의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회계 중 투자계정의 세입⁸⁾이 석유사업 이외에도 도시가스사업, 광업, 고압가스사업 등의 과징금 및 가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에특회계 세입 중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일부(100분의 3 이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 피해의 원인제공자(석유화학제품 생산업체)와 부과금의 부담주체(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⁹⁾.

또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향후 석유·석탄·가스 운반·비축 관련 시설, 주유시설 등의 주변지역 지

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9) 이를 위해 에특회계 투자계정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수입·판매부과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일부(100분의 3 이내)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123)이 발의되었음.

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유사 입법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개별 원인제공 기업이 배상 또는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는 이미 석유화학단지 건설단계부터 민원 및 법적 의무에 대해 주변지역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상을 완료한 바 있으므로, 정부의 추가비용 부담은 이중부담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임.

한편, 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¹⁰⁾에 따르면,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의 3%를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평균('25~'29년) 313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10) 국회예산정책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2024. 10. 18.)

다.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등(안 제9조, 제15조 및 제16조)

제정안은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석유화학단지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안 제9조),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조),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안 제16조) 것임.

제 정 안
제9조(사업의 우선 시행)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석유화학단지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16조(지역기업의 우대)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단지의 건설단계부터 이미 법적 의무 및 민원에 대해서 주변지역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상을 완료하였고, 건설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은 공공사업, 육성사업,

지역행사 지원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화학업주업체 사업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는 것은 경쟁제한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0

참고 1

석유화학산업단지 현황(2024년 6월 기준)

(단위: 개, %)

산업단지	시도	시군	단지명	입주업체(A)	석유화학(B)	B/A
국가 (5개)	충북	보은군	보은	1	1	100.0%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	73	45	61.6%
	충남	서산시	대죽자원비축	1	1	100.0%
	전남	여수시	삼일자원비축	2	2	100.0%
	경남	거제시	지세포자원비축	1	1	100.0%
일반 (41개)	부산	기장군	기룡2	2	1	50.0%
	대구	달성군	대성하이스코	2	1	50.0%
	세종	세종	전의2	32	20	62.5%
	세종	세종	부강	11	6	54.5%
	경기	김포시	통진(팬택)	4	3	75.0%
	경기	안성시	덕산	10	7	70.0%
	경기	안성시	방초	9	6	66.7%
	경기	안성시	안성제3	50	28	56.0%
	경기	안성시	원곡	6	3	50.0%
	경기	화성시	장안첨단(2)(외국인)	8	4	50.0%
	경기	화성시	팔탄(한미약품)	1	1	100.0%
	경기	화성시	향남제약	52	45	86.5%
	경기	안성시	지문	1	1	100.0%
	경기	안성시	개정지방	12	6	50.0%
	경기	용인시	농서	1	1	100.0%
	경기	화성시	영진바이오	1	1	100.0%
	경기	화성시	동진	1	1	100.0%
	강원	춘천시	남면	1	1	100.0%
	강원	홍천군	홍천북방	2	1	50.0%
	충북	충주시	충원	24	14	58.3%
	충북	음성군	대풍	11	7	63.6%
	충북	진천군	이월	6	6	100.0%
	충북	음성군	생극	41	21	51.2%
	충북	진천군	죽현	2	1	50.0%
	충북	음성군	오선	20	12	60.0%
	충북	진천군	신척	99	54	54.5%
	충남	공주시	탄천	34	25	73.5%
	충남	서산시	대산	4	4	100.0%
	충남	서산시	대죽	12	8	66.7%
	충남	서산시	대산컴플렉스	3	3	100.0%
	충남	서산시	현대대죽	3	2	66.7%
	충남	예산군	예당	41	22	53.7%
	충남	아산시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6	3	50.0%
	충남	공주시	남공주	22	14	63.6%
	충남	금산군	금산	1	1	100.0%
	경북	영주시	SK스페셜티일반산업단지	3	3	100.0%
	경남	창녕군	넥센	1	1	100.0%
	경남	진주시	지수	2	2	100.0%
계				619	390	63.0%

주: 1. 석유화학업종(B)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에 해당하는 업종을 의미함(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코드번호임)

2. 제정안에 따른 석유화학단지의 요건 중 “단지 내 석유화학입주업체 비율이 50% 이상인 산업단지” 기준임(입주율과 가동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석유화학입주업체의 연간 생산액 기준자료는 확인 곤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

참고 2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현황

구 분		울 산 / 온 산	여 수	대 산
(1). 단지 구분		국가 산업단지	국가 산업단지	민간 산업단지
(2). 단지 내 주요업종		석유화학, 석유정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정제	석유화학, 석유정제
(3). 석유화학단지 가동 시기		1972년	1979년	1991년
(4). 위치		남구 부곡동, 온산읍 일원	중흥동, 삼일동 일원	대산읍 독곶리, 대죽리 일원
(5). 면적		74,383천 Km ² (약 2,295만 평)	31,971천 Km ² (약 947만 평)	15,325천 Km ² (약 473만 평)
(6). 입주 기업수	단지 전체	1,485개	303개	73개
	정유·화학	314개	135개	11개
	(단지내 비중)	21.1%	44.6%	15.1%
(7). 종사자수	단지 전체	112.2천 명	25.1천 명	17.9천 명
	정유·화학	21.0천 명	21.7천 명	4.2천 명
	(단지내 비중)	18.7%	86.7%	23.5%
(8). 생산액	단지 전체	212.7조 원	84.2조 원	56.9조 원
	정유·화학	111.4조 원	82.5조 원	47.4조 원
	(단지내 비중)	52.4%	98.0%	83.3%
(9). 수출액	단지 전체	813.7억 불	318.9억 불	N.A.
	정유·화학	370.9억 불	312.3억 불	N.A.
	(단지내 비중)	45.6%	97.9%	-
(10). 정유공장	개수	2개	1개	1개
	업체명	S-Oil,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11). 원유처리능력	Capa.	1,884천 Bbl/일	800천 Bbl/일	520천 Bbl/일
	(국내 비중)	58.8%	25.0%	16.2%
(12). NCC 공장	개수	2개	4개	4개
	업체명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롯데케미칼, LG화학, 여천NCC, GS칼텍스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13). 에틸렌 생산능력	Capa.	1,760천 톤/년	6,265천 톤/년	4,775천 톤/년
	(국내 비중)	13.8%	48.9%	37.3%
(14). 유도품 공장	개수	79개	72개	42개
(15). 3대 부문 생산능력 ⁴⁾	Capa.	합 계(10,143천 톤/년)	합 계(10,454천 톤/년)	합 계(7,906천 톤/년)
		합성수지(5,638천 톤/년)	합성수지(8,279천 톤/년)	합성수지(5,858천 톤/년)
		합섬원료(4,242천 톤/년)	합섬원료(1,900천 톤/년)	합섬원료(1,723천 톤/년)
		합성고무(263천 톤/년)	합성고무(275천 톤/년)	합성고무(220천 톤/년)
		(단지내 비중)	각 55.6%, 41.8%, 2.6%	각 75.4%, 21.8%, 2.8%
	(단지내 비중)	각 55.6%, 41.8%, 2.6%	각 79.2%, 18.2%, 2.6%	각 75.4%, 21.8%, 2.8%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각 지자체, KPIA (2023년 기준)

- 1) (6). 입주기업 ~ (9). 수출액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로 타 기관 통계와 상이할 수 있음
- 2) (6). 입주기업 ~ (9). 수출액 통계는 울산/온산은 미포국가산업단지 포함, 대산은 업계 추정치
- 3) 합성수지는 PE, PP, PS/EPS, ABS, PVC, 합섬원료는 TPA, EG, AN, CPLM, DMT, 합성고무는 SBR, BR